

청주지방법원 2022. 8. 25 선고 2022가단212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파산채무자 B조합의 파산관재인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8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4. 2. 24. 접수 제474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‘피고’는 ‘B조합’을 지칭하기도 한다)2. 무변론

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권노을

별지